

集中 구실 漁港, 전남·경남에 어업 前進基地

1千9百41개소, 총 1千4百17개소

1·3종항 61個所



우리 나라 총 1천 9백 41개의 어항이 73%인 1천 4백 17개 어항이 전남 (8백 54)과 경남 (5백 63)에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산청에서 관리하는 제1·

3종항 61개항과 시도 관리 3종항 3백 25개, 내부 관리 55개소 등이 있는 1·3종항의 전남 14개소, 경남 12개소가 있다.

魚礁 해역

17倍 더 잡아

로컬 뉴스

이 같은 어획량은 인공어초를 시설하지 않은 어장에서 고등어 등 3종의 고기 4마리 5백 60그램을 잡은 것과 비교하면 물량면에서 7.4배나 많고 마리수는 52마리, 어종은 5종이 많았다.

注文津港, 水深얕아 곤혹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인 강원도 濱州郡 注文津港의 수심이 얕아져 25톤 이상 어선의 접안도 어렵다.

注文津港 어민들이 의하면 현재 각종 어선 6백 80여 척 가운데 25톤급 어선 70여 척은 항내 수심이 2~3m밖에 안돼 입·출항 때마다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과예항해를 하고 있어 좌초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만선으로 귀향하는 어선과 외지어선들은 물길이 깊은 곳을 찾느라 항해가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다.

2百 1281個港 파손 87年度

三扶·소호·산도·事

瑞海、위미항

申庚植는 지난해 11월 11일

일방 진방과 제축조제

4차 주가공사를 8억 9천

5백만 원에 수주했다.

林光士建 주식회사(사장

高世漢)

梁樂範

宋在寬

梁博俊

金元濟

鄭炫周

金鐵永

林鳳奇

申庚植

趙錫憲

梁文碩

金廷洙

林茂成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李喜雨

崔鳳齡

李鍾萬

閔炳烈

申庚植

林光洙

郭義榮

裴還甲

玉政圭

閔炳烈

李柱完

金在微

남자 65세, 여자 71세(85)
나 40여년이나
우리 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40세에 불과 했으나
1940년대만 하더라도 그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전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강좌스터는 스트레스 등으로 천수(天壽)를 갖는다.

영양과 이용

한미로 말해서 어학이 란 어업을 위해 필요하고 쓸모 있는 학구를 말한다. 즉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하여 출어준비 및 어획물의 하역처리와 어미로화, 복지후생 시설을 갖춘 어업활동의 근거 지로서 어업기지의 기능을 가진 역할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 학구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면 다음과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 어항법에 적용되는 학구 ② 항만법에 적용되는 학구 ③ 어느 법률에도 적용되는 학구

되지 않지만 사실상 적지 않은 어선이 이용하고 있는 배를 매어 두거나 후미 등 학구에 적용되는 학구이며 이를 가운데 보통 어항이라 불리는 곳은 ①의 어

나 ②의 어항으로는 어항법 제2조에서는 「어항」이라

그와 관계해서 어항법 제3조에서는 「어항설」이라

어항은 국민에게 통용성

설립시설과 항로 및泊地

수송시설은 철도 도로 등

시설물, 어선수리장, 급수 및급유시설, 어업용통신시설 등

어항으로서 행정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국민 영양의 향상과 함께 성인병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우수한 단백질원

불포화지방산과 함께 섭취

경제성실플 섭취

증권투자는 스스로 결정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곧

알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곧